

◆ 정부시책 ◆

## 물류공동화 사업 적극 지원

통상산업부는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유통업자·제조업자 등이 수송·배송·보관·하역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공동화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물류공동화는 동종 또는 이종의 기업들이 공동 수·배송을 통해 차량적재율 향상 및 집하·출하·보관 등의 물류활동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공동 수·배송을 시행하는 업체가 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도매배송업체를 물류공동화를 선도하는 물류전문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업종별·그룹사별 또는 단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통산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물류공동화사업 지원자금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공동화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에 대한 진입제한,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도심통행제한 및 공동물류시설 건립상 제약요인 등 관련제도상의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매배송업자 및 물류공동화사업의

지정시 일관수송용 표준팔레트 및 정합성을 갖는 장비나 기기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써 물류공동화의 전제인 물류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국내기업들의 물류공동화가 부진했던 것은 각 기업의 배송시스템이 자사위주의 수송체계로 되어 있는데다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데도 큰 원인이 있었다”며 “앞으로 물류공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기업들이 부담하는 물류비는 전체 매출액의 14.3%에 달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의 공동집·배송 시행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이 18.2%로 가장 높으며 화학제품제조업 15.6%, 가죽·신발제조업 12.9%, 음·식료제조업 10.6%, 섬유·의복제조업 9.5%, 가구제조업 8.3%, 종이제품제조업 7.9%, 비금속광물제조업 7.9%의 순이며 기계·장비제조업이 2.9%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 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는 차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실패한 업체에는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술혁신에 성공한 업체는 차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받거나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얻게 되고 개발된 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중 자금의 경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수혜업체 선정때 가점을 받거나 우선선정업체로 지정된다. 또 정부 및 투자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중 일정금액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받거나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에서 우선 추천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은 유망선진기술기업에 우선지정

때 3년간 종합지원 받는 것을 비롯, 기술지도업체로 선정돼 각종 애로기술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시제품 제작에서도 비용 등을 지원받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정부 등에서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중기청은 또 해외시장 진출 때에는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역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반면 실패업체에는 출연금 회수, 차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유망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때 업체당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무이자, 무담보로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지원된 자금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우지 않아 치열한 기술혁신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오는 '99년부터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지 10년이 지난 업체의 경우 특례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또 병역특례 업체당 산업기능요원 활용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인원배정 한도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이나 보충역 입영 대상자 등에서 군에서 필요한 인원 이외에 남는 인력을 산업체에 근무토록 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89년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92년에는 일반 제조업체로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한번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속해서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어 늘어나는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고 업체당 배정인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92년에는 3,148개 병역특례업체에 3만5천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돼 평균 배정인원이 11.2명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병역특례업체수는 8,386개로 늘어난 반면 배정인원은 4만650명으로 업체당 4.8명의 배정에 그쳤다.

중기청은 “이 제도가 '89년 도입된 이래 산업현장의 생산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참여희망업체수는 늘어나는 반면 배정 가능인력은 한정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99년부터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지 10년이 지난 업체를 제외시키는 병역특례졸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비슷해 소규모기업의 경우 전체 생산직 종업원의 80% 이상을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규모에 따라 배정인원을 차별화해 산업기능요원의 비율이 생산직 종업원의 50%를 넘지 않게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